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의 신속한 법제화는 시대적 요청

전자미디어를 통한 뉴스서비스 시대에는 과거의 인격권 침해기사가 포털 등을 통해 현재에도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이러한 침해구제에는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제도는 이미 발생해 종결된 침해에 대한 구제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된 기사가 포털 등을 통해 계속해서 게시됨으로써 피해가 무제한 양산되고 있는 지금은 방해원인의 제거, 즉 문제가 된 기사의 삭제 또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만 완벽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노컷뉴스 사이트에는 2006년 10월 31일부터 2007년 4월 8일까지 총 57회에 걸쳐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 어려운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당시 경인지역 민방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경인방송TV 컨소시엄의 한 축이었던 영안모자 대표이사 A 회장이 미국 정부의 정보원이라는 보도가 쏟아진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A 회장이 특정인을 통해 국내 정세 및 북한 동향을 취합한 후 이를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였고, 이러한 모종의 행위 배후에는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 내용이었다. 보도내용은 노컷뉴스뿐만 아니라 다음, 네이버 등 국내 굴지의 포털들을 통해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파되었다.

사건 당사자였던 영안모자 A 회장은 지금까지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문제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언론법제사에 새로운 쟁점을 던져주었다. 이에 대응해 노컷뉴스 측은 논란이 된 기사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라는 전통적 면책 사유를 통해 명예훼손 책임을 부인하였고, 결국 공방은 대법원(2013. 3. 28. 2010다60950판결)에 가서야 막을 내릴 수 있었다.

획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침해)배제청구권이라는 생소한 권리에 내포된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기사삭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기사삭제청구권은 해당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사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의 인격권 보호제도가 사이버 미디어 시대의 보도방식과 보도내용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보도방식과 관련해, 전자미디어를 통한 뉴스서비스 시대에는 과거의 인격권 침해기사가 포털 등을 통해 현재에도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이러한 침해구제에는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제도는 이미 발생해 종결된 침해에 대한 구제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된 기사가 포털 등을 통해 계속해서 게시됨으로써 피해가 무제한 양산되고 있는 지금은 방해원인의 제거, 즉 문제가 된 기사의 삭제 또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만 완벽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보도내용과 관련해, 민주사회에서 공적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기여는 상당 부분 '의혹 제기' 보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고, 기사제작자인 언론사들은 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항변을 통해 책임을 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확신과 신빙성 있는 조사근거를 가지고 작성된 보도라 할지라도 나중에 상당부분 허위라고 밝혀지는 경우는 허다하며, 포털 등에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방치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비밀비재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과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결국,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불가능하며, 인격권에 터 잡은 방해(침해)배제청구를 통해서만 해당 기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시대에 걸맞은 인격권 보장을 위해서는 방해(침해)배제청구권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인 페터 헤버레(Peter Häberle)는 "개인의 자유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규범복합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였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반드시 제도-조직과 절차-마련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원하면 언제든지 뉴스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박물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